

「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2023. 4. 27. 시행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, 평창군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 변경: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
- 2) 제1조 ~ 제2조: 상위법령 근거 및 군수의 책무 명문화
- 3) 제3조 ~ 제5조: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명시

- 4) 제6조 ~ 제7조: 보조금의 정산 및 지원제한 사유 명시
- 5) 제8조 ~ 제9조: 포상 및 지원절차의 준용 조례 명시
- 6) 별지 제1호 ~ 제5호서식: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서식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¹⁾에 따라
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,

제명 및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, 군수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으며,
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였고,
포상 및 지원절차에 대해 관련 군 조례를 준용토록 함.

검토결과,

「자율방범대법」 제정 전 선제적으로 제정하였던
우리 군 자율방범대 조례²⁾를 최근에 제정된 상위법에 의거하여
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법령 저촉 및 위배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1)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2022. 4. 26. 제정, 2023. 4. 27. 시행

2) 「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2014. 7. 11. 제정, 2016. 2. 19. 현행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